

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우경란 의원 발의】



2025. 02. 17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70호로 2025년 2월 3일 우경란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9조의2 관련하여 우리 구 조례에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할 것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익신고자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 규정 신설 (안 제12조의2)
- 나.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 신설 (안 제12조의3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5.2.4.~2025.2.9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조례 일부개정 배경 및 취지

-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·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천만원과 '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으며, 부패·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이라고 밝혀¹⁾ 공익신고제도 등의 활성화가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.
- 또한 상위 법령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서도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·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의 주체가 위원회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에서 행정기관, 감독기관, 수사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(2024.2.6.)된 바,
- 본 조례안에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규정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공익신고 활성화 풍토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사료됨.

○ 법적근거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

1)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(2024.12.26. 배포)

- 동법 제9조의2에서는 동법 제6조2호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은 보상금, 포상금, 구조금 지급(신청)에 관한 사항의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
- 본 조례에 수혜 가능한 정책을 안내하는 규정 신설은 상위법령에 부합함.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신 설 안
<p>제12조의2(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안내)</p> <p>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과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</p>

- 안 제12조의2에서는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6조와 제27조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구조금의 지급신청 안내 규정을 신설했으며,
- 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²⁾과 동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의 내용³⁾

2)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(보상금)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도 함께 안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

신 설 안

제12조의3(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)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으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

- 안 제12조의3에서는 동법 제26조의3에 근거한 포상금 지급 신청자 선정을 위한 지급대상자 추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.

○ 종합의견

-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재정 부담 등을 수반하는 내용은 없으며,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법률적·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3)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(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)

-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·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·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·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·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·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그 보상금·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·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·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.

참 고 자 료

1 공익신고자 보호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보호·지원 안내)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~5. 생략

6.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

7. 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
8.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

제26조(보상금)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26조의3(포상금 등)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「상훈법」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
제27조(구조금)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